

수원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0나9136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씨 담당변호사 박한영

피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4. 30.

판 결 선 고 2021. 6. 11.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9. 22. 선고 2020가단56566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20. 4. 16. 접수 제163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① 2013. 10. 1. 40,000,000원을 변제기 2014. 4. 1., 이자 월 5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② 2019. 9. 9. 20,000,000원을 변제기 2020. 2. 9.,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20. 4. 16. 남편인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4.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다. 피고와 C은 2020. 5. 18.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에 대한 확인을 받았고, 그 무렵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서 과다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이 사건 증여계약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분할자의 유채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써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갑 제2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2, 을 제2, 3, 31 내지 72호증, 제7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이 사건 증여 무렵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과 평택시 F에 있는 G아파트 D동 E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부동산의 시가에서 이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하면 그 부동산의 실제 가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5,377만 원이고 위 D동 E호 아파트의 경우 2,156만 여원으로 합계액이 7,5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외에도 700만 원 남짓의 신용카드대금 채무, 1억 3,346만 여원의 신용대출 채무와 원고 등 개인채권자들에 대한 3억 1,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그 합계액이 4억 5,000만 원을 넘고 있었던 점, ② C은 1987. 3. 20.부터 현재까지 평택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퇴직시 상당한 액수의 퇴직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C이 장래 수령할 퇴직금은 이 사건 증여 당시 C의 적극재산은 아니지만, C과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 점, ③ 피고도 2009년 무렵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였고,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리금을 매월 변제하고 있는 점, ④ C의 신용대출 채무와 개인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C이 피고와 상의 없이 부담한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갈등을 겪다가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고 있어 이 사건 증여에 위자료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준현, 판사 김정운, 판사 김재학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평택시 아파트 동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 콘크리트지붕 18층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평택시 대 2045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4.98㎡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20458 분의 56.5

- 이 상 -